

2023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서울테크노파크 특허평가보고서 지원사업(2차)

(재)서울테크노파크는 2023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특허평가보고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특허분석을 통한 기술이전에 관심 있는 서울 지역 중소·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9월

(재)서울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개요

- 총괄사업명: 2023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
- 세부사업명: 2023년 서울테크노파크 특허평가보고서 지원사업(2차)
- 주관기관: (재)서울테크노파크
- 사업목적: 특허분석 지원을 통한 서울지역 기업의 기술이전 활성화
- 신청기간: ~ 2023년 10월 4일(수), 16:00까지(평가 건수 소진 시 조기 마감)
- 지원대상: 기술이전(별첨 참고) 수요가 있는 서울 지역 기업¹⁾ 및 예비창업자
- 지원내용: 한국발명진흥회 SMART5²⁾ 시스템을 활용한 특허평가보고서 제공*
 - * 개별 특허의 특허등급(9단계), 권리성·기술성·활용성 평가자료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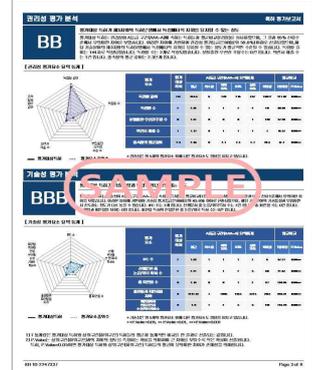
2 세부 지원내용

| 연번 | 구분 | 특허평가보고서 지원 건수 | 합계 | 지원기업 수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-|
| 1 | 기업 수요특허 (기술이전 희망특허) | 5건 | 최대 10건 | 10개사 내외 |
| 2 | 기업 보유특허 | 5건 <small>(기업 보유특허의 평가 신청 건수는 수요특허 신청 건수를 초과할 수 없음)</small> | | |

* 현재 권리유지 중인 **등록특허만 평가 신청 가능**

1)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(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포함) 및 주소가 서울특별시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
 2)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System to Measure,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의 약자로서 국가별 특허의 우수성을 특허명세서·서지정보·행정정보로부터 추출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온라인 특허 등급 평가 서비스

3 특허평가보고서(SMART5) 예시

| | | | |
|---|---|--|---|
|  |  |  |  |
| 총평 (특허등급 포함) | 권리성, 기술성 평가 | 활용성 평가 | 특허 정보 |

4 사업일정

| 구분 | 절차 | 일정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 | 서류 제출 | ~ 2023년 10월 4일(수), 16:00* | 신청기업 → 서울TP |
| 2 | 특허평가보고서 제공 | ~ 2023년 10월 13일(금) | 서울TP → 신청기업 |

* 사업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5 제출서류 및 제출처

제출서류

| 구분 | 제출서류 | 필수 여부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붙임1 | 특허평가 수요기술조사서(기술이전 희망특허 1건당 개별 작성) | 필수 |
| 붙임2 | 특허평가보고서 신청특허 리스트(기업 수요특허, 기업 보유특허) | |
| 붙임3 | 사업자등록증 | |

담당부서 및 제출처(문의처)

| 담당부서 | 제출처 | 문의 연락처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(재)서울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| yjh@seoultp.or.kr | 02-944-6017, 6035 |

※ 이메일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 유선 확인 필수.

별첨

기술이전이란?

기술이전이란?



서울테크노파크
기술이전·사업화
지원사업
안내

기술이전의 정의

"기술이전"이란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·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 (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)

기술이전의 유형

| 유형 | 정의 | |
|---------------|---|---|
| 기술매매 (양수, 양도) |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영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| |
| 라이선스 | 전용 실시권 |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(業)으로 사용할 수 없음 |
| | 통상 실시권 |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|
| 기술전수 (노하우이전) | 특허권, 실시권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, 권리의 이전 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 | |
| 기술자문 (기술지도) | 기술자(연구자) 파견 등을 통해 기술(산업)자문 및 지도를 라이선스 거래와 연계하는 방식 | |
| 공동연구 | 특정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기관, 기업 등이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연구개발 하는 것 | |
| 인수합병 (M&A) | 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&A 방식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(M&A의 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) | |

기술이전의 장점

| 비용 절감 | 시간 단축 | 기회 창출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술 매칭을 통한 연구개발비 절감 |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간의 단축 | 우수 연구진과의 협업, 기업 및 제품 마케팅 |

끝.